

『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조건을 완화하여 연대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하지 못하던 저소득층이 기금융자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연대보증인을
“구미시에 거주하는 2인” → “1명” 으로 변경(안 제9조제2항)

4. 참고사항

- 「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」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

- 연대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하지 못하던 저소득층에 대해 융자신청 조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주고자 개정하는 조례안 임

○ 주요 개정내용은

-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시 연대보증인을 “구미시에 거주하는 2인” 에서 거주지 제한없이 “1명” 으로 완화하는 것임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조건 완화로 대출이 용이하여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립기반 구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
- 융자신청 조건 완화로 인하여 채권확보 및 융자금 회수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